

수원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4가단8559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2. 3.

판결 선고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52.55㎡를 인도하고,
나. 7,2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7. 5.부터 2024. 11. 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김용희

별지